

창원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134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 론 종 결 2021. 6. 1.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9. 2. 12. 체결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이 2019. 12. 16.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711,57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711,577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급식업체인 원고는 2015. 2. 1.부터 2018.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식사를 납품하고도 64,712,400원 가량의 위탁급식대금을 받지 못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2844). 위 법원은 2019. 3. 18.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64,71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2.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해 172,841,975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돈을 나누어 2019. 3.부터 2020. 6.까지는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을, 2020. 7. 31.에는 12,841,975원을 각 지급한다.

◎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 E 주식회사는 2017. 9. 1. 채무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 소유의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다른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금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권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4. 30. 창원지방법원 F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도 2019. 4. 30. 창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다른 동산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이하 위 각 강제집행을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 동산은 2019. 9. 10. 71,040,000원에 매각되었고, 이에 관한 배당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채권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집행관은 2019. 9. 24. 이자를 포함한 71,048,076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D)가 개시되어 2019. 12. 16. 배당기일이 열렸고,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68,647,676원 중 이 사건 다른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E 주식회사에 17,936,099원을,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50,711,57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711,577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액이 피고의 배당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은 전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와 함께 배당금을 안분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이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게 직접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711,57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711,57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